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40
----------	-------

발의연월일 : 2026. 1. 27.

발 의 자 : 남인순 · 이수진 · 김 윤
진선미 · 박홍배 · 맹성규
조정식 · 김남희 · 백혜련
전진숙 의원(10인)

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재원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되어야 함. 특히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시장의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요 국가와 기관들은 이를 투자 원칙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그 적용이 임의에 머무르고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고려 대상인 투자 방식을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여 장기적 수익성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공공부문에 투자, 증권의 매매·대여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
으로 함(안 제102조제4항).

나. 기금운용지침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고려에 관한 전략·기
준 및 각 요소의 수치화 방법과 고려 비중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
105조제1항제6호 신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의 고려 전략
· 기준 및 각 요소의 수치화 방법과 고려 비중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예입·신탁·투자 또는 증권을 매매·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 ③ (생략)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 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 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 를 고려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 ----- --- <u>고려하여야 한다.</u>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 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 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 <u>사회·지배구조 등 요소의 고</u> <u>려 전략·기준 및 각 요소의</u> <u>수치화 방법과 고려 비중</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